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新 設〉</p>	<p>第10條(出資總額의 制限) ①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와 第2條(定義)第1의2號에 의한 持株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다른 國內會社 株式의 取得價額의 合計額(이하 “出資總額”이라 한다)이 당해 會社 純資産額에 100分の 25를 超過한 금액(이하 “出資限度額”이라 한다)을 超過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株式에 대한 新株의 配定 또는 당해 株式에 대한 株式配當으로 新株을 취득 또는 所有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1年 이내에 한한다.</li> <li>2. 擔保權의 實行 또는 代物辨濟의 受領에 의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한 경우. 다만,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6月 이내에 한한다.</li> <li>3.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投資法 第4條(民間投資事業의 推進方式)第1號 또는 第2號에 의한 民間投資事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會社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는 경우로서 公正去來委員會가 당해 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를 인정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20年 이내로 하되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年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li> <li>4. 構造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出資 또는 部品生産 中小企業과의 技術協力關係의 유지를 위한 出資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로서 公正去來委員會가 당해 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를 인정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5年 이내로 하되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年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li> </ol>

현 행	개 정 안
<p>〈新 設〉</p>	<p>② 第1項에서 “純資産額”이라 함은 直前事業年度の 貸借對照表에 표시된 資産의 總計에서 負債의 總計와 直前事業年度 終了日 현재 당해 會社에 대하여 出資하고 있는 系列會社の 出資金額(所有株式數에 1株當 額面價額을 곱한 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뺀 金額을 말한다. 다만, 새로 設立된 會社로서 直前事業年度の 貸借對照表가 없는 경우에는 設立 당시의 納入資本金에서 당해 會社에 대하여 出資하고 있는 系列會社の 出資金額을 뺀 金額을 純資産額으로 보며, 會社設立日 또는 直前事業年度 終了日 이후 新株의  발행, 合併 또는 轉換社債의 轉換으로 純資産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金額에서 당해 會社에 대한 系列會社の 出資金額을 뺀 金額을 합하여 計算한다.</p> <p>③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 會社の 純資産額이 감소되어 다른 會社에 대한 出資總額이 出資限度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날부터 1年間은 초과한 날의 出資總額과 초과하기 직전의 出資限度額 중 적은 金額을 出資限度額으로 본다. 그 期間 경과 후 純資産額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純資産額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出資限度額이 第3項에서 出資限度額으로 보는 金額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第11條의2(大規模內部去來의 理事會 議決 및 公示)</p> <p>① 大規模企業集團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이하 ‘內部去來 公示對象會社’라 한다)는 特殊關係人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特殊關係人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去來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規模 이상의 去來(이하 ‘大規模內部去來’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事전에 去來의 目的, 去來相對方, 去來規模, 去來條件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理事會</p>

현 행	개 정 안
<p>第14條(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p> <p>①·② (생략)</p> <p>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會社가 통지받을 당시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通知가 있는 날부터 1年間은 同項의 規定을 適用 하지 아니한다.</p>	<p>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理事會에서 의결된 大規模內部去來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假支給金, 貸與金 등 資金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경우(資金去來)</p> <p>2. 株式, 會社債, 기업어음 등 有價證券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경우(有價證券去來)</p> <p>3. 不動産, 無體財産權 등 資産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경우(其他資産去來)</p> <p>②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會의 의결내용을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하는 바에 의하여 告示하여야 한다.</p> <p>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示業務를 다른 行政機關이나 證券去來法 第6章의 規定에 의한 證券去來所(이하 “公示委託機關”이라 한다)에 委託할 수 있다.</p> <p>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를 함에 있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示委託機關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第3項에 의거하여 公正去來委員會로부터 위탁 받은 機關은 公示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會의 議事に 관하여는 商法 第3編第4章第3節第2款(理事와 理事會)의 規定을 準用한다.</p> <p>第14條(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p> <p>①·② (現行과 같음)</p> <p>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直前年度에 大規模企業集團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로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新구조 大規模企業集團으로 지정되어 통지를 받은 會社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 지정 후 第1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大規模企業集團의 系列會社로 편입된 會社가 그 지정일 또는 編入日 현재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第1項, 第3項 또는</p>

현 행	개 정 안
<p>④·⑤ (생략)</p> <p>第15條(脫法行爲의 禁止) ① 누구든지 第7條(企業結合의 制限) 第1項 및 第3項, 第8條의2(持株會社의 行爲제한 등)第1項 및 第2項, 第8條의3(債務保證 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債務保證의 禁止)第1項, 第10條의3(既存債務保證의 解消)第1項 또는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의 規定의 適用을  면탈하려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생략)</p> <p>第16條(是正措置)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第7條(企業結合의 制限) 第1項 및 第3項, 第8條의2(持株會社의 行爲제한등)第1項 및 第2項, 第8條의3(債務保證 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債務保證의 禁止)第1項, 第10條의3(既存債務保證의 解消)第1項,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제한) 또는 第15條(脫法行爲의 禁止)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行爲가 있는 때에는 당해 事業者[第7條(企業結合의 制限) 第1項第1號 또는 第5號에 위반한 경우에는 企</p>	<p>第10條(出資總額의 制限)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다.</p> <p>1.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編入日로부터 1年間은 同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2. 第10條(出資總額의 制限) 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編入日로부터 1年間은 지정일 또는 編入日의 出資總額을 出資限度額으로 본다. 다만, 純資產額이 증가하여 出資限度額이 出資限度額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⑤ (現行과 같음)</p> <p>第15條(脫法行爲의 禁止) ① ..... ..... .....,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第10條(出資總額의 制限) 第1項, 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債務保證의 禁止) 第1項..... ..... .....</p> <p>② (現行과 같음)</p> <p>第16條(是正措置) ① ..... ..... .....,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第10條(出資總額의 制限) 第1項, 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債務保證의 禁止) 第1項, ..... ..... .....</p>

현행	개정안
<p>業結合 當社會社를 말한다] 또는 違反行爲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의 是正措置를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아 行하는 때에는 同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p> <p>1. 당해 行爲의 중지 2. 株式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p> <p>3. ~ 8. (생략) ② (생략)</p> <p>第17條(課徵金)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를 취득 또는 所有한 會社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所有한 株式의 取得價額에 100分の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p> <p>第18條(是正措置의  이행확보) ①·② (생략) &lt;新設&gt;</p> <p>&lt;新設&gt;</p>	<p>..... ..... ..... .....</p> <p>1. (現行과 같음) 2. .... 이 경우 第10條(出資總額의 制限)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때에는 최근에 취득한 株式를 지정하여 處分하게 할 수 있다. 3. ~ 8. (現行과 같음) ② (現行과 같음)</p> <p>第17條(課徵金) ① .....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第10條(出資總額의 制限)第1項 ..... ..... ..... .....</p> <p>② ~ ④ (現行과 같음)</p> <p>第18條(是正措置의  이행확보) ①·② (現行과 같음) ③ 第10條(出資總額의 制限)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株式處分命을 받은 경우로서 處分對象株式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會社는 議決權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株式의 내용을 그 命을 받은 날부터 10日 이내에 公正去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命을 받은 날의 10日 후부터 公正去來委員會에 통지한 당해 株式에 대한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處分命을 받은 날부터 10日 이내에 당해 會社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會社가 議決權을 행사할</p>

현 행	개 정 안
<p>第24條의2(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위반하는 不公正去來行爲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の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p>	<p>수 없는 株式을 지정할 수 있다.</p> <p>第24條의2(課徵金) .....                  .....                  .....                  .....100分の 2(다만, 第7號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는 100分の 5).....                  .....                  .....</p>
<p>第66條(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 4. (생략)</p> <p>5.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者</p> <p>6. ~ 10. (생략)</p> <p>② (생략)</p>	<p>第66條(罰則) ① .....                  .....                  .....                  1. ~ 4. (現行과 같음)                  5.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第10條(出資總額의 制限)第1項 .....                  6. ~ 10. (現行과 같음)                  ② (現行과 같음)</p>
<p>第69條의2(過怠料) ①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億원 이하, 會社 또는 事業者團體의 任員 또는 從業員 기타 利害關係인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p>1. ~ 7. (생략)</p> <p>&lt;新 設&gt;</p>	<p>第69條의2(過怠料) ① .....                  .....                  .....                  .....                  .....                  .....                  1. ~ 7. (現行과 같음)                  8. 第11條의2(大規模內部去來의 理事會 議決 및 公示)第1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會 의결을 하지 아니한 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會 公示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公示를 한 者</p>
<p>② ~ ⑥ (생략)</p>	<p>② ~ ⑥ (現行과 같음)</p> <p>附 則 &lt;1999.12. &gt;</p> <p>①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法 第10條(出資總額의 制限) 및 第14條(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第3項第2號의 規定은</p>

현 행	개 정 안
	<p>2001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p> <p>② (出資總額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大規模企業集團으로 지정되어 있는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가 施行日 현재 出資限度를 초과하여 出資하고 있는 경우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 施行日로부터 1年間은 施行日 현재 出資總額을 出資限度額으로 본다. 다만, 純資産이 증가하여 出資限度額이 出資限度額으로 보는 金額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이 法 施行 전에 舊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第4832號 第10條(出資總額의 制限)第2項 또는 第5235號 第10條(出資總額의 制限)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舊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資本 誘致促進法(法律 第4773號)第2條(定義)第2號의 規定에 의한 第1種施設事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會社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는 경우로서 公正去來委員會로부터 당해 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 당시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한 期間동안 이 法 第10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④ 第10條(出資總額의 制限)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構造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出資로서 出資總額制限의 例外認定은 당해 會社가 2001年 4月 1日 이전에 취득 또는 所有한 株式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p>